##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관련)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 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 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 티.(IBT: Internet Based Test) 로 구분한다.	IBT 71점 이상	IBT 58 <b>점 이상</b>	IBT 52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 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 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 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 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 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u>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u> (제44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급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능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력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 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 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